

## 충청북도건축조례증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54
----------	-----

### □ 제안이유

- '99. 2. 9 건축법이 개정되고 '99. 4. 30 동법시행령의 개정 및 시행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 정비
  -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설치기준 관련조문 정비(안 제3조)
    - 건축법 제4조 제2항 및 영 제5조 제3항  
→ 건축법 제4조 제5항 및 영제5조제4항
  - 건축분쟁 제외 대상 관련조문 정비(안 제16조)
    - 건설업법 제32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 일부 불합리한 내용 개선·보완
  - “소속 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법령 용어 사용(안 제4조, 제8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 “재적위원 관련 조문” 정비 (안 제9조, 제22조)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정비(안 제10조)

첨 부

-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련법규 발췌 1부

##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2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3조, 제18조제3항, 제25조중 “소속공무원”과  
제20조중 “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5조중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62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안의 심의”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를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  
호선한다”로 한다.

제16조중 “건설산업법 제3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제21조제2항중 “건축관계공무원”을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제2항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 각호의 1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u>제3조(설치)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소속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u></p> <p><u>제5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건축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u></li> <li><u>2.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사항</u></li> <li><u>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u></li> <li><u>4. 법 제62조의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u></li> <li><u>5. 기타 건축에 관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u></li> </ol>	<p><u>제3조(설치)---제5항</u></p> <p><u>- 제4항의</u></p> <p><u>제4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u></p> <p><u>③</u></p> <p><u>소속직원</u></p> <p><u>제5조(기능)</u></p> <p><u>1. (현행과 같음)</u></p> <p><u>(삭제)</u></p> <p><u>(삭제)</u></p> <p><u>2. 법 제62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u></p> <p><u>3. (현행 제5호와 같음)</u></p>

현 행	개 정
<p><b>제8조(간사 및 서기)</b>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과 소속 <u>건축관계공무원</u>이 된다.</p>	<p><b>제8조(간사 및 서기)</b> ①(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과 소속 <u>건축업무</u>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p>
<p><b>제9조(회의)</b> ① - ② (생략)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p>	<p><b>제9조(회의)</b> ① - ②(현행과 같음)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p>
<p><b>제10조(소위원회)</b> ① 생략          ② <u>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u>          ③ - ⑤ 생략</p>	<p><b>제10조(소위원회)</b> ① 현행과 같음          ② <u>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 호선한다.</u>          ③ - ⑤(현행과 같음)</p>
<p><b>제13조(수당과 여비)</b> 도 <u>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b>제13조(수당과 여비)</b> 도 <u>소속직원</u></p> <hr/> <hr/> <hr/> <hr/>



현 행	개 정
<p><b>제22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b></p> <p>① - ③ (생략)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판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p>	<p><b>제22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b></p> <p>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p>
<p><b>제24조(비용부담)</b> ① (생략)</p> <p>② 법 제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u>다음 각호와</u>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련공무원의 출석,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생략)          ③ (생략)</p>	<p><b>제24조(비용부담)</b> ①(현행과 같음)</p> <p>② -----          -----          ---<u>다음 각호의 1과</u> -----          -----          -----          -----          1. - 3.(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b>제25조(수당과여비)</b>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b>제25조(수당과여비)</b> 도 <u>소속직원</u> -----          -----          -----          -----          -----</p>

# 관계 법령 발췌

## ■ 건축법

개정전	개정후
<p><u>제4조 (건축위원회)</u> ① 건설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u>건축위원회</u>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u>제4조 (건축위원회)</u> ① 건설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p> <p>② · ③ · ④ 생략</p> <p>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u>건축위원회</u>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u>지방자치단체의 조례</u>(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한다</p>
<p><u>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u> ①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건설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u>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u> ①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 ■ 건축법 시행령

개정전	개정후
<p>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② 생략  <u>③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u></p> <p>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p> <p>2. 삭제</p> <p>3.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p> <p>4.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p> <p>5. 삭제</p> <p>6.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설계안의 심의</p> <p>7.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p> <p>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 관한 사항</p> <p>    가.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p> <p>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p> <p>9. 삭제</p>	<p>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② · ③(신설)생략  <u>④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u></p> <p>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p> <p>2. 삭제</p> <p>3. 삭제</p> <p>4.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p> <p>5. 삭제</p> <p>6. 법 제62조 · 법62조의2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심의</p> <p>7. 삭제</p> <p>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p> <p>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p> <p>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p> <p>9. 삭제</p>